



양재규
정책연구팀 팀장, 변호사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 경계는 어디인가?

8, 31, 49. 무슨 숫자들일까. 90년대와 2000년대 우리 법원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했던 대상 집단들의 크기다. 8은 기무사 현역장성의 숫자이고, 31은 대전 지역 검사의 숫자이며, 49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의 숫자다. 10년 전만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집단의 크기는 기껏해야 두 자리 숫자에 그쳤다. 여기에 295라는 세 자리 숫자를 새로 추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가 있는 날 저녁,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는 대회 관계자 및 토론에 참여한 대학생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식 도중 한 국회의원은 아나운서를 지망한다는 여학생에게 조언삼아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〇〇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의 분위기나 장소 등을 감안하면, 별 생각 없이 가볍게 한 말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 발언이 같은 달 20일자 모 일간지에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제하의 기사로 보도되면서부터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게 된다. 마침내, 한국아나운서협회(남자 265명, 여자 295명 등록) 회원인 여성 아나운서 154명이 발언의 당사자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사건 초기, 모욕죄 성립 여부를 두고 세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국회의원 측은 자신은 문제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자신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수가 많고 구성원의 변화가능성이 있는 아나운서 일반을 지칭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말하자면, 대상 집단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을 부정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긍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공중파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한국 아나운서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로서 등록을 통하여 그 경계가 분명하고, 특정되어 있어 …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들이라는 집단으로 표시되었고, 한국 아나운서 협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들의 수가 295명에 이르지만 …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사람들이 이 사건 표현 내용과 피해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집단의 개별 구성원, 적어도 한국 아나운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

이제까지 우리 법원은 집단에 대한 비난이 곧 구성원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인 집단에 한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긍정해왔다. 그러다보니 15명이나 25명이나 200명이나 하며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선을 긋는 견해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집단의 크기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 경계선을 295명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사실 이번 판결 이전에도 13,564명이나 되는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에는 대상 집단의 크기나 구성원의 수만이 명예훼손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예상이 옳다면, 앞으로 등록이나 신고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그 대상 집단의 경계가 분명하고 또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비록 수백 명이 넘는 다소 큰 규모의 집단이라 하더라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